



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(대한변호사협회)

2021. 5.

사법지원실 [형사]

1. 개요

- 기간 : 2021. 5. 3.(월) ~ 2021. 5. 10.(월)
- 실시 방법 및 대상자 : 대한변호사협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통해 실시
- 총 설문 대상자 수 : 28,435명
- 총 설문 응답자 수 : 320명
- 응답 비율 : 1.1%

2.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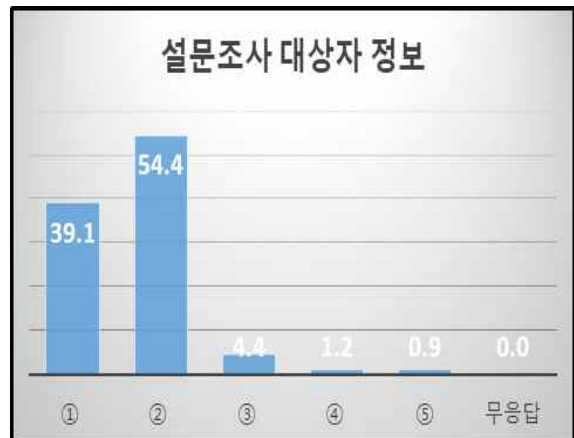
■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

1. 귀하의 직책은 무엇인가요?

- ① 개인변호사 ②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③ 사기업 사내 변호사
④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 ⑤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25 | 39.1 |
| ② | 174 | 54.4 |
| ③ | 14 | 4.4 |
| ④ | 4 | 1.2 |
| ⑤ | 3 | 0.9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

2. 구속영장 실질심사(사선, 국선 포함)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

- ① 없다.
- ② 있다.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36 | 11.2 |
| ② | 284 | 88.8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■ 제도 도입의 필요성

[영장심사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(보석조건부 영장제도)]

-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보증금, 주거제한,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[현행법의 태도]

- 영장기각결정이나 발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영장재청구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과 석방을 신청하여야 함. 구속적부심에서는 기각결정, 석방결정 이외에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(기소전 보석)이 가능하나, 비금전적 석방조건만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무자력자, 소년범 등의 이용이 제한됨

[각국의 구속대체제도]

- 최초기일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(미국) - 체포된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여 열리는 최초의 출석기일에서 서약서나 보석금 등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
- 구속집행유예제도(독일) -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출석의무, 주거지 이탈 금지의무, 담보 제공의무 등의 처분으로 구속집행을 유예하는 제도
- 사법통제명령 제도(프랑스) - 구속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정기적 출석,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정하여 사법통제명령을 내리고,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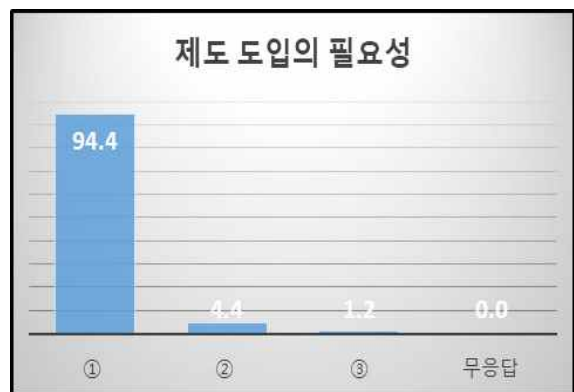


3.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'구속을 대체하는 제도'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,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(정부안), 제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'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' 도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.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석방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신가요?

- ① 도입 필요성 있음 ② 도입 필요성 없음 ③ 모르겠음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302 | 94.4 |
| ② | 14 | 4.4 |
| ③ | 4 | 1.2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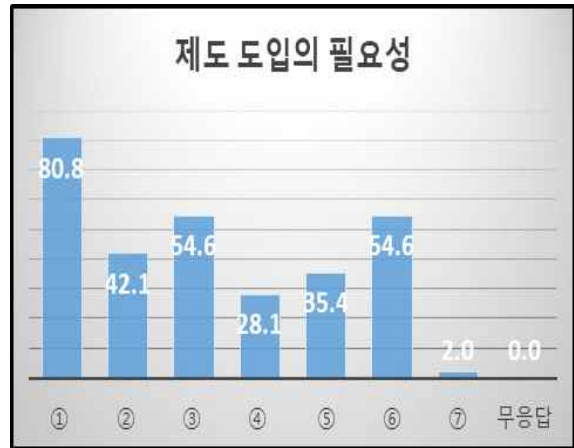
4. (3-①항에 답변한 경우)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(복수선택 가능)

- ①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의 실현에 부합함
- ② 영장심사의 본안재판화를 방지할 수 있음
- ③ 구속과 불구속의 한계에 있는 경우 구속을 하면서 조건부 석방을 하게 되면 구속과 불구속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
- ④ 영장발부 후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임
- ⑤ 보증금 납입 외 비금전적 조건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 가난한 서민을 위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음
- 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거제한,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피의자의 도주나 재범 예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- ⑦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

| 구분 | 명수 | 응답비율(%)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
| ① | 244 | 80.8 | 27.1 |
| ② | 127 | 42.1 | 14.1 |
| ③ | 165 | 54.6 | 18.4 |
| ④ | 85 | 28.1 | 9.5 |
| ⑤ | 107 | 35.4 | 11.9 |
| ⑥ | 165 | 54.6 | 18.4 |
| ⑦ | 6 | 2.0 | 0.6 |
| 무응답 | 0 | 0.0 | 0.0 |
| 합계 | 899 | 297.6 | 100.0 |



5. (3-②항에 답변한 경우)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(복수선택 가능)

- ① 구속사유 있는 피의자를 조건부로 석방하게 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
- ② 조건부석방은 처벌약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적절함
- ③ 판사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영장발부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
- ④ 영장을 기각해야 할 사건들이 오히려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로 석방을 명하는 변형적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
- ⑤ 현행 법령에서도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제도는 불필요함
- ⑥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응답비율(%) | 백분율(%) |
|-----|----|---------|--------|
| ① | 10 | 71.4 | 25.0 |
| ② | 5 | 35.7 | 12.5 |
| ③ | 4 | 28.6 | 10.0 |
| ④ | 7 | 50.0 | 17.5 |
| ⑤ | 12 | 85.7 | 30.0 |
| ⑥ | 2 | 14.3 | 5.0 |
| 무응답 | 0 | 0.0 | 0.0 |
| 합계 | 40 | 285.7 | 100.0 |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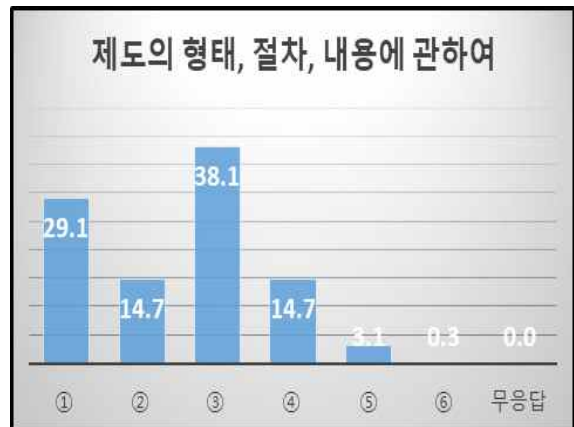
▣ 제도의 형태, 절차, 내용에 관하여

6.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을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본적인 체계와 형태는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?

- ①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조건부 석방을 명하는 형태
- ②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(구속영장 발부 및 별도 결정 필요)
- ③ 구속영장 발부, 기각, 조건부 석방결정 중에 택일하는 형태
- ④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규정하는 형태(조건준수명령, 구속대체처분, 사법통제명령, 사법감시명령, 조건부과처분 등)
- ⑤ 모르겠음
- ⑥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93 | 29.1 |
| ② | 47 | 14.7 |
| ③ | 122 | 38.1 |
| ④ | 47 | 14.7 |
| ⑤ | 10 | 3.1 |
| ⑥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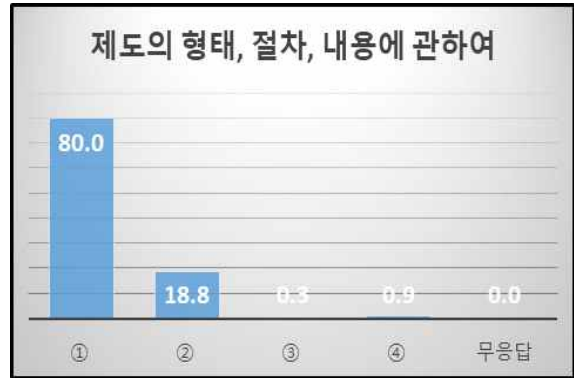
7.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신청권 필요함(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대체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의무화함, 대체의 무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제시, 보증서 제출 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대체처분을 원활히 하는 의미가 있음)
-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(신청이 없더라도 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면 실익이 없음,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 조건부석방신청도 따로 기각하여야 하는지 등 업무처리의 번잡 우려)
- ③ 모르겠음
- ④ 기타()

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256 | 80.0 |
| ② | 60 | 18.8 |
| ③ | 1 | 0.3 |
| ④ | 3 | 0.9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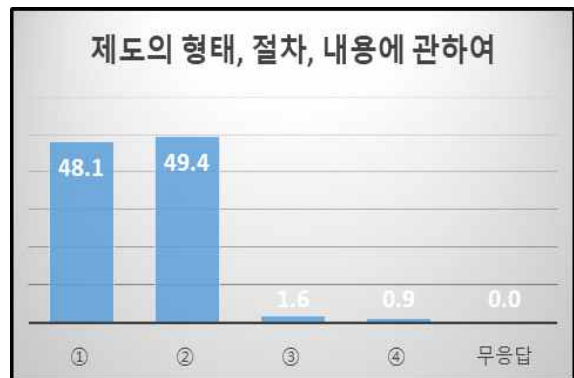


8. 검사에게 조건부석방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신청권 필요함(검사 입장에서 피의자의 출석만 담보된다면 구속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건에서 활용될 여지 있음)
- ② 신청권 필요하지 않음(구속영장 청구권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부석방 신청권 불필요)
- ③ 모르겠음
- ④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54 | 48.1 |
| ② | 158 | 49.4 |
| ③ | 5 | 1.6 |
| ④ | 3 | 0.9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9.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보석제도(형사소송법 제95조)와 같이 '필요적 석방'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(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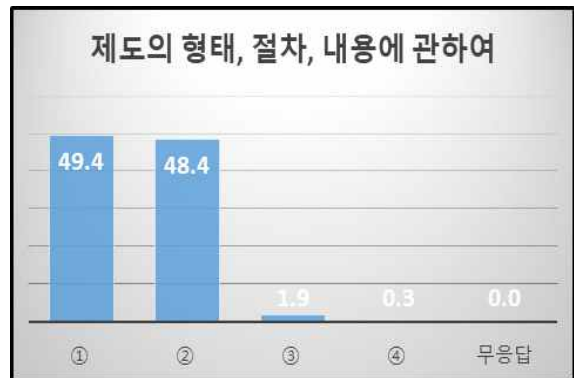
- ① 필요적 석방 규정이 필요함(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건부석방을 하도록 규정)



- ② 임의적 석방으로 해도 무방함(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재량적으로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)
- ③ 모르겠음
- ④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58 | 49.4 |
| ② | 155 | 48.4 |
| ③ | 6 | 1.9 |
| ④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10. 조건부 석방의 '예외사유'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- ① 구속사유와 중복되는 예외사유를 따로 둘 필요 없음
- ② 구속적부심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
- ③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
- ④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예외사유와 같이 규정
- ⑤ 구속적부심, 보석,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다른 별도의 기준 필요
- ⑥ 모르겠음
- ⑦ 기타 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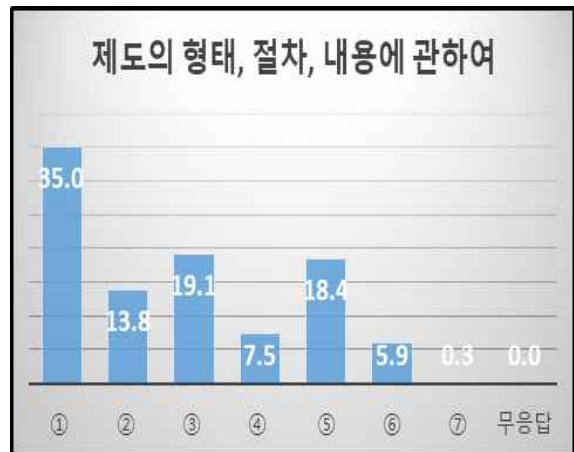
| 구속적부심 (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) | 필요적보석 예외사유 (형소법 제95조) |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2018. 9. 13.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, 2019. 8. 8.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) |
|---|--|---|
| 1.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. 피해자,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나 재산 | 1. 피고인이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.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| 1.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. 피해자,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나 재산 |



| | | |
|---|---|---|
| <p>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</p> | <p>3.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</p> <p>4.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</p> <p>5.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</p> <p>6. 피고인이 피해자,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</p> | <p>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</p> <p>3. 피고인이 사형,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</p> |
|---|---|---|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12 | 35.0 |
| ② | 44 | 13.8 |
| ③ | 61 | 19.1 |
| ④ | 24 | 7.5 |
| ⑤ | 59 | 18.4 |
| ⑥ | 19 | 5.9 |
| ⑦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11. '석방조건'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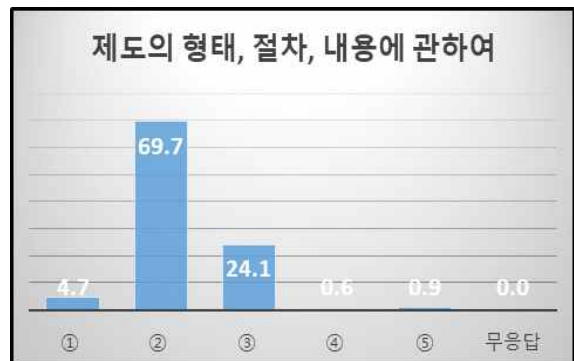
- ① 구속적부심과 같이 보증금 납입으로 제한
- ② 보석의 조건과 같이 보증금 납입 외 8가지 금전, 비금전 조건을 준용
- ③ 구속적부심, 보석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함
- ④ 모르겠음
- ⑤ 기타()



| 구속적부심 (형소법 제214조의2) | 보석의 조건 (형소법 제98조) |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2018. 9. 13. 의안번호 15494호로 발의된 것, 2019. 8. 8. 의안번호 21884호로 발의된 것) |
|--|--|---|
| <p>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(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.(단서 생략)</p> <p>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,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.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·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.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.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. 피해자,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·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.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.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.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.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.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| <p>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...</p> |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5 | 4.7 |
| ② | 223 | 69.7 |
| ③ | 77 | 24.1 |
| ④ | 2 | 0.6 |
| ⑤ | 3 | 0.9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

12. 보석의 조건(형사소송법 제98조)에 정한 조건 이외에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에 적합한 석방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(복수선택 가능)

- ① 전화감청, 전자감응식 감시장치의 착용 등 감시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의 제출
- ② 차량운행 금지,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보관
- ③ 금주, 마약 등 사용금지 ④ 무기나 흉기, 기타 위험한 물건의 소지 금지
- ⑤ 고용 유지, 구직활동 의무 부과 ⑥ 법원이 지정하는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금지
- ⑦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, 치료 ⑧ 모르겠음 ⑨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응답비율(%)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① | 201 | 62.8 | 18.5 |
| ② | 184 | 57.5 | 17.0 |
| ③ | 164 | 51.3 | 15.1 |
| ④ | 155 | 48.4 | 14.3 |
| ⑤ | 61 | 19.1 | 5.6 |
| ⑥ | 139 | 43.4 | 12.8 |
| ⑦ | 165 | 51.6 | 15.2 |
| ⑧ | 3 | 0.9 | 0.3 |
| ⑨ | 13 | 4.1 | 1.2 |
| 무응답 | 0 | 0.0 | 0.0 |
| 합계 | 1,085 | 339.1 | 100.0 |



13. 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방조건을 일반조건과 특별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- ① 필요성 있음(다양한 석방조건이 마련되더라도 실무운영상 보증금 납입 조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)
- ② 필요성 없음(비금전적 조건에 의한 석방제도의 도입 취지상 다양한 석방조건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조건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)
- ③ 모르겠음 ④ 기타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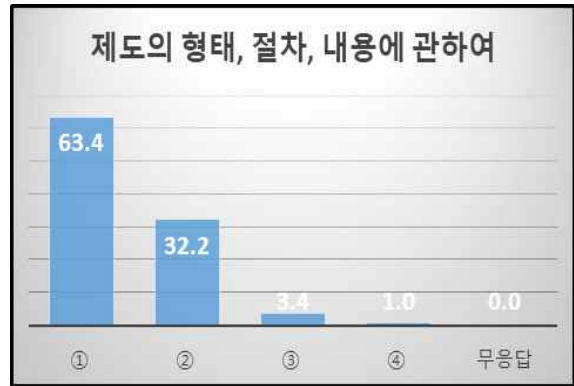
- ㉠ 일반조건 : 필요한 때에 출석할 것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나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정서를 제출하는 조건
- ㉡ 특별조건 : 위 일반적 조건만으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 제한, 고용 유지, 보증금 납입 등(각호로 열거)



의 조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부가함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203 | 63.4 |
| ② | 103 | 32.2 |
| ③ | 11 | 3.4 |
| ④ | 3 | 1.0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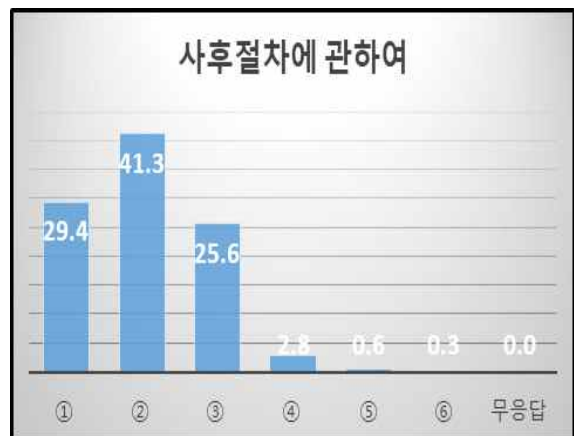
■ 사후절차에 관하여

14. 석방조건을 변경(삭제, 추가)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
- ② 경한 조건에서 중한 조건으로 변경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
- ③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
- ④ 심문이 필요하지 않음
- ⑤ 모르겠음
- ⑥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94 | 29.4 |
| ② | 132 | 41.3 |
| ③ | 82 | 25.6 |
| ④ | 9 | 2.8 |
| ⑤ | 2 | 0.6 |
| ⑥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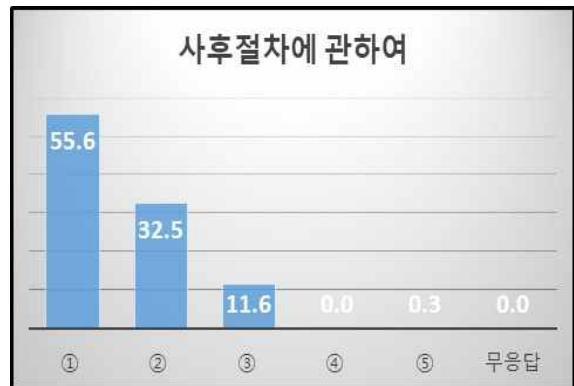


15. 석방조건을 위반하여 이를 취소하고 구금하는 경우 심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필요적 심문으로 규정
- ② 당사자의 심문신청이 있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적 심문으로 규정
- ③ 심문이 필요하지 않음
- ④ 모르겠음
- ⑤ 기타()

● 결과 내용(법관)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78 | 55.6 |
| ② | 104 | 32.5 |
| ③ | 37 | 11.6 |
| ④ | 0 | 0.0 |
| ⑤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■ 불복절차에 관하여

[영장항고제도에 관한 논의]

- 현행 법률의 태도 : 현행 형사소송법 해석상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·재항고는 불가능함. 한편,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,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(기소전 보석)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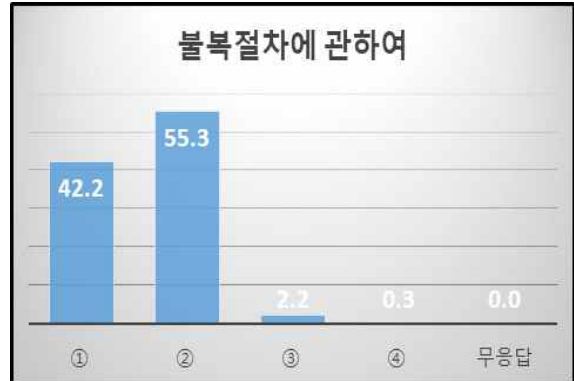
16. 현행 영장제도에서 영장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필요성 있음(영장재판도 재판이므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)
- ② 필요성 없음(구속적부심,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)
- ③ 모르겠음
- ④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35 | 42.2 |
| ② | 177 | 55.3 |
| ③ | 7 | 2.2 |
| ④ | 1 | 0.3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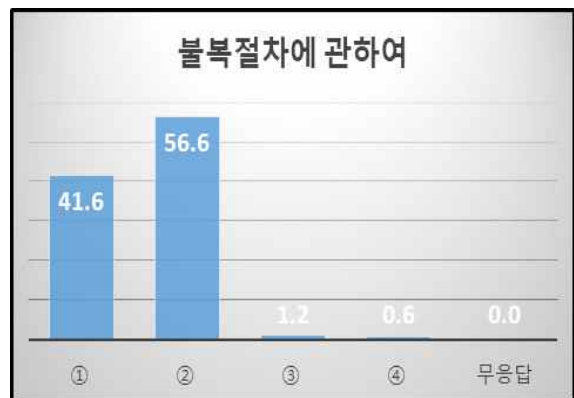


17.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(구속영장 발부를 전제)이 가능해진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

- ① 필요성 있음(구속적부심과의 균형상 석방조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제도 필요)
- ② 필요성 없음(구속적부심, 영장재청구를 통해 실질적 불복이 가능하고, 불복 제도의 중복으로 실무운영상 혼란 우려)
- ③ 모르겠음
- ④ 기타()

● 결과 내용

| 구분 | 명수 | 백분율(%) |
|-----|-----|--------|
| ① | 133 | 41.6 |
| ② | 181 | 56.6 |
| ③ | 4 | 1.2 |
| ④ | 2 | 0.6 |
| 무응답 | 0 | 0.0 |
| 합계 | 320 | 100.0 |



18. 구속영장 심사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세요.

● 결과 내용

- 불구속 수사원칙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. 밀행성을 가진 수사방식이 거의 대



- 부분이므로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수사를 하는 관행은 부적절하다고 봄
-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,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고려할 때,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 -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조속한 입법을 희망합니다
 - 조건부석방 도입시 영장기각 조건임에도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건부석방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
 -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도 제도 도입이 필요함 다만 유전무죄등 사법불신 방지위해 재벌등에게는 금전보다 비금전 조건을 강화해야함
 - 반드시 필요
 - 특별히 더할 의견 없습니다.
 - 신중한 인신구속제도의 운용, 다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, 위 제도는 필요할 것임.
 - 좋은 제도임
 -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
 - 도입필요
 -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 있다고 생각됨
 - 제도가 규정되면 적극 활용하여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램
 -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, 조건부 석방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
 - 조건부 석방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